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 
원 고

손해배상(기)

피 고

감액 50%

소송대리의료 등 인 태하  
호는 김인영, 민경, 조빛나, 김재훈, 지현  
서정권, 김은정, 이상화, 안소진

본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

과

결정사항

